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 도 자 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 다 나 은 정 부</b>
	<b>배포일시</b>	<b>2019. 7. 9.(화)</b> <b>총 3매(본문2, 붙임 1)</b>	
<b>담당 부서</b> 녹색도시과	<b>담 당 자</b>	·과장 안경호, 사무관 김광주, 주무관 송하연 ·☎ (44)201-3742, 3752, 3754	
<b>보 도 일 시</b>	2019년 7월 1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9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개발제한구역, 여가·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장기미집행공원 중점 선정...7곳에 총 50억 원 지원

-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.
 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'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,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.
  - 이를 위해 지난 2. 18~5. 31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'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으며,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하여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하였다.
  -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,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시 1개소, 광주시 1개소, 대전시 1개소, 경기도 1개소, 전남도 2개소, 경남도 1개소(대상공원명은 붙임 참조)이며,
    -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.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.

-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’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·도(강원, 전북, 제주 제외) 및 90개 시·군·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매년 사업비의 70~90%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,
  -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, 장기미집행공원 176,000㎡를 조성하게 된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.

□ **생활공원 선정 개요**

- (선정개소) 7개소(장기미집행공원 6, 일반공원 1)
  - \* (공모접수) 11개소(서울 3, 광주 1, 대전 1, 경기 3, 전남 2, 경남 1)
- (평가방법) 1차 현장평가(6.11) 및 2차 선정위원회 평가(6.27)
- (예산 및 지원금액) 총 50억원 / 1개소당 평균 7.2억원
  - \* (지원방법) 20년도 예산지원(※재정자립도 등 감안 차등지원(사업비의 70~90%))
  - \* (지원근거)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(주민지원사업)

□ **선정사업 현황**

연번	사업명 (대상지)	면적 (㎡)	총사업비(백만원)			비고
			계	국비	지방비	
계	7개소	146,966	12,866	5,000	7,866	
1	서울시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조성	10,000	1,429	1,000	429	장기미집행 공원
2	광주시 광산구 신촌 생활공원	11,900	1,000	700	300	장기미집행 공원
3	대전시 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	7,533	445	400	45	근린공원
4	경기도 성남시 밀리언 근린공원	37,411	7,563	1,000	6,563	장기미집행 공원
5	전남도 담양군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	29,600	500	450	50	장기미집행 공원
6	전남도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공원	10,000	500	450	50	장기미집행 공원
7	경남도 창원시 달천공원	10,000	1,429	1,000	429	장기미집행 공원

□ **향후계획**

- 사업비 배정('20.2월), 시도별 생활공원 설계 및 공사('20.3~'20.12)